■ EU 의회, 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을 비판

○ EU 의회는 최근 의회 환경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을 비판함

- 의원들은 유럽의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기본정책이 진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다고 지적하였고,
  - 집행위원회의 정책은 명확한 기준의 정의가 없는 정책과 대책들의 의미 없는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함

○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함

-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이나, EU의 예비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간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거래제도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함
  - 따라서 EU의 예비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함
- 국제배출권거래제(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)[10]는 교토의정서에서 거론된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, 앞으로 11월 헤이그에서 열릴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안건임
  -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[11]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음

○ EU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우선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실행방안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

-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,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온난화가스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포함해야 하며,
  - 기업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

천정용(cildon@hanmir.com, 02-3669-4099)

10) 교토 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 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, 각 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임

11) 에코브리프 13호, 8/1, '영국, 배출권거래제 유인책 마련' 참조